

군포시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gim72@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포시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1. 제안이유

○ 군포시에서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포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시민의 권리(안 제4조)
- 다. 위해식품등에 대한 조치(안 제6조)
- 라. 식품안전 교육 실시(제 7조)

3. 관련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군포시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과 같은 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안전”이란 식품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해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외한 식품 중 개나 고양이 등을 불법적으로 도살하여 감염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4.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위해성이 없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권리
2. 군포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수립하는 위해식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및 식품안전시책에 대해 알권리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위해식품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판매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영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해식품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을 시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의 목록을 공개하고, 이를 제조·가공·판매·수입하는 행위를 금지

2.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판매·수입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② 시장은 위해식품등에 해당하는 식품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식품안전 교육 실시) ① 시장은 위해식품등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사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교육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1.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법률

2. 위해식품등에 대한 인식 방법과 신고 방법

3. 위해식품등의 섭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4. 건강한 식습관과 다양한 영양소 섭취 방법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1명

2. 식품안전 전문가

3. 식품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내 식품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위탁) 시장은 제7조와 10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